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의원 : 최정훈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개정이유

- 현재 조례 내용상 표창금지 규정 외에 다른 종류의 포상을 금지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이 없음.
-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을 제한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메꾸고 포상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 표창금지 조문의 적용 대상을 상장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 대상 전체로 확대함(안 제12조 제목, 제6호 단서 및 제8호)
- 형사사건 관련 포상금지 대상자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벌금 200만원 이

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안 제12조제7호)

5. 검토의견

- 현행 충청북도 포상조례상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제4조)인데, 포상 금지 또는 제외 사유 관련 조문인 제 12조(표창금지)는 표창대상자에 한하고 있어 표창 외 다른 포상자에 대한 포상제외(포상금지)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법률 조문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안 제12조의 제목을 표창금지→포상금지로 바꾸고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포상의 종류 중 각종 대회나 교육과정에서 거둔 성적을 원인으로 한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수여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과정이 다른 포상과는 종류가 다르므로 포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발전 등의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 시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부적격자 제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⁴⁾.
- 신설된 안 제12조제7호는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과 일반도민에 대해서도 포상의 신뢰성 및 영예성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포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안 제12조제7호는 현행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하여 공무원의 경우 공

4) 매일신문(2023. 8. 17.), “권익위, 지자체 자치법규 436건 개선 권고” 보도자료 내용 참고

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아닌 일반인의 경우 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각각 포상이 제한되도록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포상의 공신력과 품격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